##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이슈



Indonesia Non Tariff Barriers Issue

인도네시아, 2-클로로에탄올과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기준 강화



## 국제 기준에 맞춰 2-CE와 ETO 검출 기준 수정, 수출 대상국의 검출 기준 유의해야

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처(BPOM)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된 인도네시아 식품 중 즉석 라면의 조미료, 즉석 라면, 고추(칠리페퍼), 자스민차, 아이스크림에서 지속해서 기준치 이상의 2-CE(클로로에탄올)와 ETO(에틸렌옥사이드)가 검출되는 문제사례가 발생하자, 인도네시아 《농업부 장관령 43호 규정》의 2-CE와 ETO 검출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강화함

2-CE와 ETO는 일반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의 화합물로, 국제 기준에 맞춰 수정된 2-CE와 ETO의 검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2022년 10월 31일부터 해당 기준이 시행됨

## ※ 국제 기준에 따라 강화된 인도네시아 2-CE 및 ETO 검출 기준

분류	2-CE(클로로에탄올)	ETO(에틸렌옥사이드)
대상 품목	아이스크림, 채소/해초/콩/깨, 면류(파스타, 라면 등), 약초 및 향신료	아이스크림, 채소/해초/콩/깨, 면류(파스타, 라면 등), 약초 및 향신료(고추가루)
최대 허용치	85mg/kg	0.01mg/kg

해당 조치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되는 식품에 적용되는 개정사항이지만, 인도네시아 내 유통 식품도 동일한 기준치가 적용됨. 한국은 이번 개정사항의 대상 품목을 대부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수 있으며, 라면 제품의 경우 2021년 기준 연간 약 1,165만 달러, 아이스크림은 약 38만 달러 규모가수출됨. 따라서 인도네시아로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. 특히 한국의 즉석 면류 제품(라면 등)과 식물성 식이 보충제의 경우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 시 동일한 2-CE와 ETO 검출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, 해당 성분에 대한 수출 대상국의 잔류농약 기준치를 사전에 꼭 확인하고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

## 출처

BPOM, PEDOMAN MITIGASI RISIKO KESEHATAN SENYAWA ETILEN OKSIDA (ETHYLENE OXIDE), 2,6-DIISOPROPILNAFTALENA (2,6-DIISOPROPYLNAPHTHALENE), DAN 9,1, 2022,10,31

